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<p>제2023-86호 2023년 10월 11일(수)</p> | <p>시  보</p> <p>여수시</p> | <p>시 정 지 표</p> <p>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홍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공 고

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|
| ○ 여수시 공고 | 제2023-2798호 | 보상계획 열람공고(봉화산 산림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) | 1 |
| ○ 여수시 공고 | 제2023-2811호 |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| 4 |
| ○ 여수시 공고 | 제2023-2819호 |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5 |
| ○ 여수시 공고 | 제2023-2824호 | 도로지정 공고(소라면 덕양리 632번지) | 11 |
| ○ 여수시 공고 | 제2023-2830호 |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[소라면-(주)여수그*] | 13 |
| ○ 여수시 공고 | 제2023-2831호 | 공유수면 점·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| 14 |
| ○ 여수시 공고 | 제2023-2836호 | 202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 매각 전자입찰 공고 | 17 |

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| |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 | | |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보상계획 열람 공고

여수시에서 시행하는 『봉화산 산림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10. 11.

여 수 시 장 (인)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봉화산 산림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- 사업시행자 : 여수시장
- 사 업 규 모 : L=130m, B=8m
- 사 업 기 간 : 2023. 3. 30. ~ 2024. 12. 31.

2. 열람공고기간 : 2023. 10. 11. ~ 2023. 10. 26.(15일간)

3. 열람방법 :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시보와 홈페이지(주소:www.yeosu.go.kr)에 게재 및 여수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

4. 보상시기 :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

5. 보상방법 및 절차(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)

- 보상은 현금보상이며,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.
- 보상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·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)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-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,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감정평가업자 추천서

○ 추천업체 : ○○○감정평가사

| 연번 | 토지소재지 | 편입지번 | 편입면적(m ²) | 소유자 | | 인감 날인 | 전화번호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-|----|
| | | | | 주소 | 성명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- 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,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※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※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※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.

6. 기 타

-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8조(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)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(☎061-659-4066)로 문의바랍니다.

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
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(위생교육)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2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알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 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

여 수 시 장

1. 제 목 :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3. 10. 10.(화) ~ 2023. 10. 25.(수) (15일간)
3. 납기일자 : 2023. 10. 31.(화)
4. 근거법규 :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2조, 제14조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5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| 업종 | 업 소 명 | 대표자 | 영업소 소재지 | 위반사항 | 처분내용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물위생 관리업 | 황토건설 | 이** |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4길 14 |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| 과태료 600,000원 가산금 18,000원 |
| | 사람과 공간 | 허** | 전라남도 여수시 해산1길 11, 1층 |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| 과태료 600,000원 가산금 18,000원 |

6. 고지사항
 - 위 공고 대상자는 납기일자 내에 여수시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문의사항: 여수시 식품위생과 최해인(☎061-659-4387)

공 고

「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0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사유

-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(5년)까지 연장함.(안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(붙임2) 문서 참고

4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10. ~ 2023. 10. 20.(10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참조 : 주차차량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기타 의견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번호 061-659-5864)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우편주소 : 여수시 도원로 279, 3층 주차차량과 (59673)
- 업무담당자 : 주차차량과 윤다빈(db2665@korea.kr)
- 문의전화 : 061-659-4160

(붙임 1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「여수시 전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항목별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견(사유) | 기타 참고사항 |
|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(붙임 2)

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를 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| 행 | 개 | 정 | 안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존속기한) | ②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 제2조(존속기한) | ②----- ----- |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
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10.>

제2조(설치 및 존속기한) ① 시장은 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[본조 전부개정 2018. 12. 10.] <신설 2019. 1. 1.>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[본조 전부개정 2018. 12. 10.]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
2.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
3.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
5.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<신설 2020. 10. 30.>
6.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[본조 신설 2018. 12. 10.] <신설 2020. 10. 30.>

제5조(일시차입)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0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0.>

[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. 12. 10.]

제6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.

<개정 2018. 12. 10.>

[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8. 12. 10.]

제7조(예비비)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0.>

[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8. 12. 10.]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 <개정 2018. 12. 10.>

[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. 12. 10.]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. 12. 10.]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32, 632-2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3. 10. 10.

여 수 시 장

1. 위 치 : 소라면 덕양리 632
2. 도로면적 : 59m²
3. 도로길이 : 15m
4. 도 로 폭 : 4m
5.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

| 구분 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면 적(m ²) | | 비 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| | | | 공부면적 | 지정면적 | |
| | 계 | | | 961 | 59 | |
| | 소라면 덕양리 | 632 | 전 | 961 | 59 | |

6. 관련도서 : 별첨참조



건축허가 신청 사전고지

「여수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고지 합니다.

2023년 10월 10일

여 수 시 장

1. 건축허가 신청현황

가. 대지위치 :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432번지 외 2필지

나. 대지면적 : 9,506㎡

다. 용 도 : 자원순환관련시설(폐기물재활용시설)

라. 구 조 : 일반철골구조, 철근콘크리트구조

마. 규 모

- 건축면적 : 1,893.20㎡

- 연 면 적 : 2,041.70㎡

- 층 수 : 지상1층 / 2개동, 지상2층 / 1동

- 최고높이 : 12.35m

2. 인허가 접수일자 : 2023. 10. 4.

※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(허가과 ☎659-4104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공유수면 점·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

공유수면 점·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10. 11.

여 수 시 장

1. 신청개요

| 신청인 | 점용·사용 장소 | 목적 | 면적 | 사용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 공원사무소 |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1-33번지 지선 | 다도해해상 부잔교 시설공사 | 897 | 15년 |

2. 공람장소, 공람기간

- 공람장소: 여수시 해양정책과
- 공람기간: 2023. 10. 11. ~ 2023. 10. 30.(20일간)

3.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: 2023. 10. 11. ~ 2023. 10. 30.(20일간)
- 제출방법: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
- 제 출 처: 등기우편(여수시 신월로 648, 4층 해양정책과)
전자우편(chlsmile1004@korea.kr)
- 담 당 자: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

4.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(☎659-3972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위치도

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
|-------|----|------|
| 의견제출인 | 성명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

| | |
|------------|----|
| 의견제출 내용 | 의견 |
| | 기타 |

「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7항,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 여수시장(해양정책과)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202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·장비 등 일괄 매각 전자입찰 공고

『202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』으로 폐업되는 어선의 기관, 장비, 의장품 어구 등 일체를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여 수 시 장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【일괄입찰】

- 가. 건명 : 감척어선의 기관, 장비, 의장품, 어구 등 매각
- 나. 매각대상 물건 : 감척어선 2척의 기관, 장비, 의장품, 어구 등 총 31점(붙임 목록 참고)
 - 기관·전자장비 보관 장소 : 감척대상 어선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음
 - 사업포기 등으로 매각대상 기관·장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찰율에 따라 공제 후 계약함.
 - 매각 대상 물품은 우리시와 계약한 어선해체처리업자와 협의 후 인수한다.
(도난 우려가 있는 전자장비, 의장품 등에 대해서는 대상어선 인수와 동시에 확인 후 어선해체 처리업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전자장비, 의장품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인수 할 수 있다.)
- 다. 매각 예정가격 : ₩ 31,417,700원(감정평가액 157,088,500원의 20%)
- 라.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
 - 2023. 10. 12.(목) 10:00 ~ 2023. 10. 18.(수) 18:00
- 마. 입찰서 제출처 :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『온비드』 <http://www.onbid.co.kr>
- 바. 개찰 일시 : 2023. 10. 19.(목) 10:00
- 사. 개찰 장소 :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입찰집행관 PC

2. 입찰 참가자격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(일반·법인사업자, 개인)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,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
- 나.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(이하 “온비드:onbid” 라 함)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미등록자는 “온비드” 홈페이지(<http://www.onbid.co.kr>)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다.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

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3. 입찰 방법

- 가.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, 입찰서는 “온비드” (<http://www.onbid.co.kr>)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.
- 나.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다. 입찰서의 제출은 “온비드”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“온비드”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“온비드”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라.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마.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바.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,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,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,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.

4.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

- 가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(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)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“온비드”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,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- 나.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“신한위탁” 또는 “하나위탁” 입니다.
- 다.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,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라.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 제외)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시고에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됩니다.
 - ※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
- 마. 입찰보증금 납부 시 “온비드” 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(분할납부 불가)으로 입금하여야 하며,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.
 - ※ 입찰보증금을 「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」, 「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」, 「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 하는 경우」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**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**합니다.
- 나.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이면 “온비드”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(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)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6. 입찰의 무효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, “온비드”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.

7.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

- 가.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(개인)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온비드: onbid) 운용 담당자 (☎1588-5321)에게 문의하시고
- 나. 은행시스템 피크(Peak)시간대의 경우, 은행(온비드 지정 은행계정)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: 오전 10:30~11:30, 오후 14:00~16:00(평일 기준)

8.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

- “온비드”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“온비드” 상(공매공고-연기공고, 취소공고)에 게재합니다.

9.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

- 가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**7일 이내**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, 입찰보증금은 시금고로 귀속됩니다.
- 나.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부터 우리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가 대상어선을 인수하면 즉시 분리, 인수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(인수지연시 우리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에서 분리보관 -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)
- 다. 기관·장비 매매대금은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「**납부고지서 겸 영수증**」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
10. 기타 사항

- 가.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.
- 나.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, 입찰 공고조건,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, 입찰 이후 기관·장비, 의장품, 어구 등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**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,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,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**
- ※ 물품은 소유자 관리 중으로 실물확인을 희망할 경우 소유자 또는 여수시 수산경영과(☎ 061-659-3920)에 사전연락 요망
- 라. 낙찰자는 매각물건 해체(분리) 시에 반드시 사업자(선박소유자), **우리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와 사전에 협의**하여 계약된 장소에서 해체(분리)작업을 하여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거나 해체(분리)작업시 선체 침몰,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.
- ※ **도난 우려가 있는 장비에 대해 선박 해체 업체와 협의하여 즉시 선박으로부터 분리 할수 있다.**
- 마. 천재지변 또는 어선의 해체작업 현장 사정에 따라 대상어선의 인수지연으로 매각 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바. 낙찰자는 낙찰된 기관 및 의장품을 어선으로부터의 해체(분리),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, 운반시 발생하는 사고 및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.
- ※ **기타 부득이한 사유(사업포기 및 공공용도 재활용 등)로 낙찰물건이 인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, 폐업어선 품목별 입찰산정 금액으로 감액정산하여 차감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함.**
- 사.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이나 행정상,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아.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
-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(온비드: onbid) 이용에 관한 사항
 - 홈페이지 : <http://www.onbid.co.kr>
 - 입찰방법(입찰자) 문의처 : ☎1588-5321(온비드 시스템관리자)
 - 기관·전자장비 등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
 - 전남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☎061-659-3920(담당자 : 김인호)로 문의
 -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: <http://www.onbid.co.kr> "온비드" 시스템
 - 입찰서 제출 여부 : 인터넷입찰장/나의 입찰물건/입찰진행중/입찰상세정보

-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: 인터넷입찰장/나의 입찰물건/입찰진행중/입찰상세정보
- 입찰 결과 : 인터넷입찰장/나의 입찰물건/입찰결과

- 붙임 : 1. 매매계약서 1부.
2. 기관·장비 인수인계서 1부.
3. 기관·장비 매각 명세표 1부. 끝.

폐업어선의 기관·장비 등 매매계약서

물품의 표시 : 폐업어선의 기관·장비 등 (별지목록)

위 폐업어선의 기관·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(여수시장 : 이하 “甲”이라한다) 과 매수인(이하 “乙”이라 칭한다)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: 기관·장비 등의 매매에 있어 “乙”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“甲”에게 지불하기로 하며,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완납한다.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|
| 매매대금 | 합 계 일금 | 원정(₩) | |
| | 입찰보증금 일금 | 원정(₩) | |
| | 금회입금액 일금 | 원정(₩) | |

제2조 : 대상물건 폐업어선 중 공공용으로 활용계획 및 기타사유 발생 폐업어선에 시설된 기관·장비 등은 인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제3조 : 기관·장비 등의 인계·인수는 개별 선주 및 우리시와 계약된 해체처리업체와 상의하여 선정된 해체장소에서 실시한다.

제4조 : “甲”의 해체처리업체 선정지연 등 기타의 사유로 폐업어선의 기관·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“乙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5조 : “乙”은 폐업어선의 기관·장비 등의 인수에 있어 “甲”의 인수일정 및 수량에 의하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6조 : 계약 후 “乙”은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“乙”이 “甲”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제7조 : “乙”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“乙”이 “甲”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제8조 : “乙”은 기관·장비 등의 매각 공고내용에 게재한 매각대상 기관·장비 등이 교체, 분실, 선박소유자 임의매각을 제외 하고는 인수·인계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(사전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“乙”에게 있으며, 변상조치는 불가함)

제9조 : 기관·장비 등의 인수(선체에서 기관·장비 분리작업 포함)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“乙”이 부담한다.

제10조 : “乙”은 기관·장비 등의 인수 후에 기관·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법령위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“乙”이 책임을 지며 “甲”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.

제11조 : “乙”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“甲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2조 : “乙”은 인계·인수된 물건에 대하여 인계·인수 즉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나 방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 : “甲”과 “乙”은 미 인계·인수 물건에 대하여는 입찰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甲”과 “乙”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3 년 월 일

매 수 인
(乙)

주 소 :
성 명 : (인)

매 도 인
(甲)

전남 여수시 시청로 1 (학동) - 22 - 여 수 시 장 (인)

기관 및 장비 등 인수인계서

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인수·인계 완료 하였는바, 본 인수·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, 향후 인수·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일시 / 장소 :

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인수자 (매입업체) | 성 명 | (인) |
| | 주 소 | (전화 :) |
| 인계자 (해체업체) | 성 명 | (인) |
| | 주 소 | (전화 :) |

| 기관 및 주요 장비 등 | 품 목 명 | 수 량 | 제 작 연 도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|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